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회 규정

제정 2024. 3. 1.

개정 2025. 4.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2조 및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이하 “학부” 라 한다) 교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수회는 학부 재적 전임교원과 협약에 의한 겸무 교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첨단융합학부 학부장(이하 “학부장” 이라 한다), 부의장은 교무부 학부장이 된다.

제3조(소집) 교수회는 필요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교수회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부장은 필요에 따라 교수회에 출석이 불가한 교원이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학부장은 교수회 심의·의결사항 중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결의 또는 전자 결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차기 교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서울대학교 학칙·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2. 학부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평의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4. 입학, 전공선택,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8. 학부 내 조직 및 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학부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규정에 정한 사항이나 학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임) ① 교수회는 제5조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심의·의결이 위임된 사항 중 중요한 사안의 결과는 교수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사항 중 해당 위원회에서 교수회에 회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의결한 경우에는 교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교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출석교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2024. 3. 1.)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4. 16.]

첨단융합학부 소관 위원회 위임 업무 및 심의의결 절차

심의안건내용	사전심의 또는 위임의결	심의의결
1. 학칙, 제 규정의 개정과 제정	학사운영위원회	교수회
o 학칙, 제 규정 등 상위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경미한 개정	<u>학사운영위원회</u>	-
o 그 밖에 자구 또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u>학사운영위원회</u>	-
2. 입학, 전공선택, 수료 및 졸업	학사운영위원회	-
3.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학사운영위원회	-
4. 학생 포상 및 징계	학생 포상 및 징계위원회	-
5. 교과과정	학사운영위원회	-
6. 전공의 설치 및 폐지	학사운영위원회	교수회
7. 평의원, 학부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	<u>교수회</u>
o 평의원, 학부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 관리	<u>학사운영위원회</u>	-
8. 교원 인사	<u>인사위원회</u>	-
9. 기타 사항		
o 교육과 연구에 관한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위원회	교수회
o 주요 시설사업과 시설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위원회	-
o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위원회	-
o 학생 및 교수의 정원조정	학사운영위원회	교수회